

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0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권순선, 권영희,  
김경영, 김재형, 김정환,  
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  
김평남, 김희걸, 문병훈,  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 
박순규, 서운기, 성흠제,  
송명화, 송정빈, 양민규,  
오중석, 이승미, 이영실,  
이현찬, 임종국, 장상기,  
전석기, 조상호, 채유미,  
최 선, 한기영, 황규복,  
황인구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며, 다양해진 세대 구성을 조례에 담고자 함.
-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내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한문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8조제6호).
- 나.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(안 제19조제2항).

다.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함(안 제43조제3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6호 중 “일·가족 양립”을 “일·생활 균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일과 가족의 양립”을 “일·생활 균형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한부모가족·장애인가족·다문화가족”을 “한부모가족·장애인가족·다문화가족·외국인주민 가족·1인 가구”로 한다.

제4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·운영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일·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9. 그 밖에 <u>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	<p>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일·생활 균형</u>----- -----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일·생활 균형</u>----- -----</p>
<p>제19조(평등한 가족생활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한부모가족·장애인 가족·다문화가족</u>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,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평등한 가족생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한부모가족·장애인 가족·다문화가족·외국인주민 가족·1인 가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3조(기능)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43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·운영 지원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	2021033000000004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이병도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
접수일 : 2021.03.30	
회신일 : 2021.03.31	내용문의 : 02-2180-7942

###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(평등한 가족생활)제2항은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대상자에 외국인주민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선언적·권고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  - 같은 조례안 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, 제43조(기능)의 경우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거나,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